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6-48
----------	-------

제안년월일 : 2026. 4. 2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구 의회 회의 규칙에 실시간 회의 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의사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심사 자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복되는 장(章) 번호를 정비하여 조문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근거 신설(안 제78조의3)
-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정비(안 제86조)
- 다. 중복된 장(章) 번호 정비(안 제11장)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회의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 제목 “(제척과 회피)”를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2조 앞의 “제10장 보칙”을 “제11장 보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86조(제척과 회피) ①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p>	<p>제78조의3(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u>의회의 회의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p> <p>③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86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p> <p>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p>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 설〉

제10장 보칙

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의사팀 이지예
연 락 처	02-3153-6185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